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52 발의연월일: 2024. 12. 23.

발 의 자:이종배·김예지·성일종

박형수 · 김소희 · 박덕흠

김성원 · 조배숙 · 엄태영

이종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은 최우선으로 담보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단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공무원(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 및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과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보유할 것을 단편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임.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단편적으로 규율되던 위원 자격 관련 사항을 결격사유에

통합하여 규정하며, 이를 해임사유에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9조제1호의2·제1호의3·제6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委員은 國會議員의 選擧權이 있고 政黨員이 아닌 者 중에서"를 "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중 "居住하는 國會議員의 選擧權이 있고 政黨員이 아닌 者중에서"를 각각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공무원(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 2.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
- 3. 정당의 당원인 사람
- 4. 과거 3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
- 5.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추천후보자(「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로 등록되었던 사람
- 6. 과거 3년 이내에 정당 및 정당추천후보자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구에서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신고되어 활동하거나 선거대책기구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

문이나 고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各號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정당추천후보자로 등록한 때
- 1의3. 정당 및 정당추천후보자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구에서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신고되어 활동하 거나 선거대책기구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으로 활동한 때. 이 경우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한다.
- 6. 제4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해임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4호부터 제6호 까지 및 제9조제1호의2·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해당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 ①	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市・道選擧管理委員會의 <u>委</u>	②
員은 國會議員의 選擧權이 있	<u>원은</u>
고 政黨員이 아닌 者중에서 國	
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	
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地域을	
관할하는 地方法院長이 추천하	
는 法官 2人을 포함한 3人과	
敎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있	
는 者중에서 3人을 中央選擧管	
理委員會가 위촉한다.	,
③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의	3
委員은 그 區域안에 居住하는	<u>거주하는</u>
國會議員의 選擧權이 있고 政	<u>사람 중에서</u>
黨員이 아닌 者중에서 國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이 추	
천한 사람과 法官・敎育者 또	
는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중에	
서 6人을 市・道選擧管理委員	
會가 위촉한다. 다만, 政黨이	
추천하는 委員은 選擧期間開始	
日(委託選擧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國民投票案公告日 후에는 당해 區・市・郡選舉管 理委員會가 위촉할 수 있다. ④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 · 면 · 동의 구역 안에 居住하는 國會議員의 選 擧權이 있고 政黨員이 아닌 者 중에서 國會에 交涉團體를 구 성한 政黨이 추천한 사람과 學 識과 德望이 있는 者중에서 4 人을 區・市・郡選擧管理委員 會가 위촉한다. 다만, 邑・面의 區域안에 軍人을 제외한 選舉 權者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읍・ 면 · 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은 그 읍 · 면 · 동을 관할하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의 區域안에 居住하는 國會議員選 擧權者중에서 이를 위촉할 수 있다. ⑤ (생략) ⑥法官과 法院公務員 및 教育 公務員 이외의 公務員은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이 될

<u>수</u> 없다.

⑦ ~ ⑬ (생 략)

4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⑤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⑦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 제4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공무원(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 2.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는사람
 - 3. 정당의 당원인 사람
 - 4. 과거 3년 이내에 정당의 당 원이었던 사람
 - 5.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추천후 보자(「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로 등록되었던 사람
 - 6. 과거 3년 이내에 정당 및 정 당추천후보자를 위하여 「공 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 거운동기구에서 선거사무관계 자로 선임・신고되어 활동하 거나 선거대책기구에서 후보 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

第9條(委員의 解任事由) 各級選舉 管理委員會의 委員은 <u>다음 各</u> 號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解任・解囑 또는 罷免되지 아 니한다.

1. (생 략) <신 설>

<신 설>

2. ~ 5. (생 략) <신 설>

회규칙의	으로 전	성한다	

第9條(委員의 解任事由) -----

----**.**

- 1. (현행과 같음)
- 1의2. 정당추천후보자로 등록한 때
- 1의3. 정당 및 정당추천후보자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구에서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신고되어 활동하거나 선거대책기구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으로 활동한 때. 이 경우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2. ~ 5. (현행과 같음)
- 6. 제4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